

2026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세미나

언론소송 도지관할의 법적 성격

일시 2026. 5. 15.(금) 14:30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1층 언론중재위원회 제1강의실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이 발간물에 게재된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발간물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목 차

인사말	3
	최완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Part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관할규정 해석	5
	김기수 특허법원 판사
Part2 언론중재법상 토지관할 규정의 문제점 - 조정신청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15
	채희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변호사
Part3 언론소송 관할에 관한 실무적 고찰 - 재판 지연 해소와 예측 가능성 확보를 중심으로	25
	문윤정 동아일보사 변호사
Part4 <언론소송 토지관할의 법적 성격> 세미나 발제문	31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Part5 독일의 논의에서 바라본 언론소송 재판관할권의 쟁점	41
	이수종 언론중재위원회 전문위원
Part6 언론중재법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항의 관할에 관하여	53
	오정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유토론	59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담 당
14:30 ~ 14:40	개회	
	인사말	• 최완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14:40 ~ 14:45	현안 브리핑	• 이정희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장
14:45 ~ 15:55	사회	•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특임교수
	발제	• 김기수 특허법원 판사 • 채취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변호사 • 문윤정 동아일보사 변호사 •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이수종 언론중재위원회 전문위원 • 오정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55 ~ 16:15	휴식(Coffee Break)	
16:15 ~ 17:15	자유토론	•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특임교수
17:15 ~ 17:25	질의응답	
17:25 ~ 17:30	폐회	

안녕하십니까,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최완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언론소송 토지관할의 법적 성격’입니다. 다소 생소한 주제일수도 있는데, 언론보도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직결된 중요한 쟁점으로서 시급히 정리될 필요가 있는 실무현안입니다.

언론중재법과 민사소송법이 교차하는 영역인 언론소송 토지관할 문제에 관해 현재 법원 내에서도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사건이송에 따른 재판지연, 당사자 불편, 민원증가 등 여러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우리 위원회가 사건기록을 송부할 법원을 정하는 내부기준도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법원의 언론재판 실무와 언론조정·중재 실무 사이의 간극을 점검하고, 토지관할에 관한 법리를 명료하게 정리함으로써 피해구제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의 패널분들은 모두 법원, 학계, 입법 및 실무 현장을 대표하는 최고의 전문가들로서 오늘의 토론이 수준 높고 심도 있게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세미나의 사회를 맡아주신 심석태 교수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김기수 판사님, 오정후 교수님, 이수종 전문위원님, 황성필 서기관님, 채휘진 중재위원님, 문윤정 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실무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발표해 주실 이정희 조사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중재위원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언론소송의 토지관할에 관한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실무 운용의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art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관할규정 해석**

김기수 | 특허법원 판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등¹⁾의 소 관할규정 해석

김 기 수
특허법원 판사²⁾

1.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관할 규정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

제1항에 따른 소³⁾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2.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

-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의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관한 관할규정은 2005. 1. 27. 언론중재법 제정 당시부터 동일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었음(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 언론중재법 제정 관련 국회의안정보상 관할규정의 입법취지에 관한 특별한 언급은 없음
- 다만, 2005. 1. 27. 제정된 구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은 정정보도등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민사집행법 제303조는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은 제6항의 특칙으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한 제26조 제6항 전단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됨[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전원재판부]
- 이에 따라 2009. 2. 6. 개정 언론중재법은 제26조 제6항을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는 것으로 개정함

1)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2) 본 발표문은 발표자 개인의 의견일 뿐 법원의 공식적 입장과 무관합니다.

3) 피해자가 법원에 제기하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3. 정정보도청구의 관할 규정의 해석에 관한 결정례

- 정정보도청구와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하나의 소로 제기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관한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이 정정보도청구의 소와 관련하여서도 관련재판적에 따라 관할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됨(만일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의 관할 규정을 전속관할을 정한 조항으로 해석하면 관련재판적 조항의 적용도 배제됨)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법원은 다수의 사건에서 정정보도청구 관할규정을 전속관할로 보는 결정을 하고 있고, 특히 서울중앙지법이나 서울남부지법의 언론전담부에서도 위 관할규정을 전속관할로 보고 판단을 하고 있음

- 1)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0. 12. 16.자 2019가합102102 결정(전속관할 위반 이송)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26조는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1항).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르면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전속관할에 속한다.

-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21.자 2022가합103231 결정(전속관할 위반 이송)⁴⁾

4)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위 결정은 부산고등법원 2023라5147 결정(이송결정에 대한 항고)에 의해 취소됨(다만, 취소이유를 보면, 언론중재법상 관할규정이 전속관할이 아니라는 해석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위 사건의 정정보도청구가 언론중재법이 아닌 민법 764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원고는 피고들이 보도한 기사들이 허위임을 전제로 피고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⁵⁾ 및 민법 제764조에 따른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언론중재법 제26조는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1항),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한편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정하고(민사소송법 제33조),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관련재판적 규정 및 제30조의 변론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31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위 피고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과 모순·저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소송절차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5조 본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7.자 2024가합105202 결정(전속관할 위반 이송)

- 위 부산지법 동부지원 결정과 동일한 취지
- ★언론전담재판부인 15부의 결정이라는 점이 의미가 있음

4) 인천지방법원 2025. 4. 15.자 2025가단210282 결정(전속관할 위반 이송)

- 위 부산지법 동부지원 결정과 동일한 취지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5. 28.자 2024가합101297 결정(전속관할 위반 이송)

- 위 부산지법 동부지원 결정과 동일한 취지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14.자 2024가합499 결정(전속관할 위반 이송)

- 위 부산지법 동부지원 결정과 동일한 취지

5)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해당 조문은 언론사등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을 규정한 것이고,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언론중재법 제26조 제1항이므로, 이를 언론중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설회한다.

– ★언론전담재판부인 15부의 결정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9. 15.자 2025가합347 결정(전속관할 위반 이송)

– 위 부산지법 동부지원 결정과 동일한 취지

8) 대구지방법원 2025. 9. 24.자 2025가합200939 결정(전속관할 위반 이송)

– 위 부산지법 동부지원 결정과 동일한 취지

9) 서울중앙지법 언론전담재판부의 현재 실무례

전속관할임을 전제로 관할에 대한 보정명령을 보낸 후 이송하고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10.자 2024가합1830 결정(이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1.자 2025가합15150 결정(이송)

4. 정정보도청구의 관할 규정을 전속관할로 해석하는 근거(사건)⁶⁾

1) 문언 및 체계상 근거

–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문언 자체로 전속관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 조항을 단순한 임의관할 또는 일반 토지관할 확인규정으로 본다면, 이 조항은 별다른 독자적 의미를 갖기 어려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은 민사소송법 일반원칙에 의하더라도 당연히 관할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

– 즉, 이 조항을 전속관할 규정으로 보아야만 조항의 독자적 규범적 의미가 살아나게 됨.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68209 판결(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와 같은 약정은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해석될 수 있음)

6) 정정보도청구의 관할 규정의 해석론에 관한 종전 연구를 찾아보기 쉽지 않음. 2010년 김인검 부장판사가 언론재판실무에 관하여 작성한 글에, 언론중재법상 관할 규정은 전속관할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논거는 설명하고 있지 않음.

2) 입법목적상 근거

-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청구는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는 성격이 다름. 이들 청구는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사후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제도임. 손해배상은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만, 정정보도 등은 이미 형성된 여론과 정보환경을 바로잡는 기능을 하므로 신속성이 매우 중요
- 또한 정정보도 등 사건은 언론의 자유, 인격권, 국민의 알 권리, 공적 관심사에 대한 토론의 자유가 교차하는 영역이므로, 정정보도의 필요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 반론보도의 요건, 보도문 작성 방식 등 전문적 판단이 요구됨
- 이러한 사건을 일반 토지관할 원칙에 따라 분산시키기보다는, 피고 언론사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당하도록 한 것은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공익적 고려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은 일종의 관할집중 효과를 가지는 규정
- 따라서 이 조항을 임의관할 규정으로 보면, 정정보도 등 사건을 일정한 전문성과 절차적 통일성을 갖춘 재판부에서 처리하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약화됨

3) 연혁적 근거

- 연혁적으로 보더라도 전속관할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 앞서 본 것처럼 구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등에 관한 청구를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가처분절차에 관한 관할은 민사집행법 체계상 전속관할로 해석됨(민사집행법 제21조는 민사집행법상 재판적을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음[가처분 사건의 신속한 처리라는 공익적 목적])
- 따라서 제정 당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은 가처분절차에 따르는 정정보도등 사건의 관할을 특별히 정한 규정으로서 전속관할적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음
- 그 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09년 개정으로 정정보도청구의 재판절차가 민사소송절차로 바뀌었지만, 관할규정 자체는 유지됨. 즉, 위 2009년

- 개정 전후로 관할규정의 성격 자체가 변화되었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음
- 나아가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의 관할규정은 정정보도청구의 소 뿐 아니라 가처분절차가 준용되는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소에도 적용되는 것인데, 동일한 관할규정을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소의 관할에 적용할 때에는 전속관할 규정으로, 정정보도청구의 소의 관할에 적용할 때에는 전속관할 규정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부자연스러움

4.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청구가 병합된 경우의 실무적 처리

- 문제점: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사건을 전속관할로 해석할 경우, 관련 재판적의 적용이 배제됨. 따라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와 병합하더라도 원고의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언론 피해자에게 소송상 불편을 끼치는 측면이 있음
- 해결 방안 (민법상 정정보도청구 활용): 우리 법원은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외에 민법 제764조에 기한 정정보도청구도 허용하고 있음. 민법상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중재법상 전속관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원고 주소지 법원에 손해배상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함
- 부산고법 2023. 11. 9.자 2023라5147 결정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중 정정보도 등 청구 부분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민법 제764조에 근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언론중재법이 적용되어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에서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언론보도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바는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아래에 “또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64조).”라고 기재하여 위 소장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정정보도 등 청구의 원인이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인지,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써 구하는 것인지 명백하지 않다.

②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는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반하여, 민법 제764조에 따른 청구는 피고들의 보도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까지 구하고 있다.

③ 특히 원고들이 문제 삼는 보도는 2022. 3. 2.과 같은 달 3일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2. 9. 6. 비로소 제기되어 만약 이 사건 소 중 정정보도 등 청구 부분을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로 볼 경우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제14조 제1항에 따른 기간(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④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심 법원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소 중 정정보도 등 청구 부분의 청구원인이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가 아닌 민법 제764조에 따른 청구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언론전담부의 실무: 현재 우리 법원 실무에서는 소장에 기재된 정정보도청구의 관할이 의심스러운 경우, 곧바로 이송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관할 근거를 밝힐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원고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정정보도청구의 근거를 '민법 제764조상 청구'로 명확하게 특정함으로써 관할 위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아래는 서울중앙지법 언론전담부의 관할 관련 보정명령 예시임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다음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부족인지대 198,000원¹⁾을 납부하고 그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원고들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반론보도)의 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사항을 청구취지에 반영한 청구취지변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법원에 관할이 있음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의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전속관할이 있음).

Part2

**언론중재법상
도지관할 규정의 문제점
- 조정신청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채휘진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변호사

언론중재법상 토지관할 규정의 문제점

— 조정신청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채 휘 진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8중재부 중재위원/변호사

1. 언론중재법상 토지관할 규정의 문제점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상 조정신청인이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을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하는 사건에서, 중재부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기록을 관할 법원으로 송부해야 한다.¹⁾

그런데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이하 ‘언론중재법상 관할규정’)은 정정보도청구등 소송의 제1심 관할을 “피고(언론사)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²⁾, 민사소송법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보통재판적인 피고의 소재지 외에 “의무이행지(채권자의 주소지 등)의 법원” 등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재판적 규정을 두고 있다.³⁾

이에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 정정보도청구등 사건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가 피고(언론사)의 소재지와 원고(채권자)의 주소지 중 어느 쪽의 관할 법원으로 조정기록을 송부해야 하는지가 실무상 문제되고 있다.

통상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신청인(원고)의 편의를 감안하여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조정기록을 송부하고, 법원은 이렇게 원고 주소지 법원으로 송부된 사건을 그대로 소송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일부 법원은 위 언론중재법상 토지관할 규정을 ‘전속관할’로 보아 피고(언론사) 소재지 법원만이 관할을 가진다는 해석하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기록 송부한 사건을 피고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한 사례도 발생

1) 언론중재법 제22조 ④ 제3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하고 상대방인 언론사 등을 피고로 한다.

2) 언론중재법 제26조 ⑤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3) 민사소송법 제8조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5조(관련재판적):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중 하나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나머지 청구도 제기할 수 있다.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재판 지연과 당사자 불편 등 실무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본 발제에서는 이러한 언론중재법상 토지관할 규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특히 조정신청인(원고)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에 관한 실무적 개선방안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언론중재법상 관할규정의 해석

가. 해석상의 쟁점

(i) **임의관할설:** 언론중재법상 관할규정은 재판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사물관할로서 ‘합의부’ 관할을 규정한 것일 뿐, 토지관할까지 피고의 보통재판적 법원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입장이다.

(ii) **전속관할설:** 언론중재법상 관할규정이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의 일반적 토지관할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므로, 정정보도청구등사건의 토지관할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법원에만 있다고 해석하는 입장이다.

나. 임의관할 및 전속관할의 차이점

(1) 통상 **임의관할**의 경우는 민사소송법의 일반규정에 따른 합의관할, 변론관할⁴⁾이 인정되고, 관할이 여러 군데가 되는 관할경합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임의관할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송을 다른 법원이나 합의부로 이송할 수도 있다.⁵⁾

4)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5)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②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③ 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재판할 수 있다.

④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

(2) 반면 전속관할은 법정관할 가운데서 재판의 적정·공평 등 고도의 공익적 견지에서 오로지 특정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게 한 것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관할경합이 생길 수 없으며, 관할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이송도 허용되지 않는다.⁶⁾

다. 판례 및 실무 현황

(1) 현재까지 언론중재법상 관할규정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원고 주소지 법원 중 일부는 그대로 본안 심리를 진행한 반면(임의관할설 입장), 다른 법원은 이를 관할 위반으로 판단하여 언론사 소재지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였다(전속관할설 입장).⁷⁾

(2) 언론중재위원회는 과거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 정정보도청구등 사건에서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원고(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전술한 법원 판례상의 혼선으로 인하여 피고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의 기록 송부를 검토하는 등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라. 합리적 해석방안

전속관할에 관한 일반적 입법 형식, 언론중재법의 입법취지, 정정보도청구등 소송의 일반적 특성 등을 감안하면, 언론중재법상 관할규정의 해석은 일부 법원이 채택한 전속관할설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기존 실무처럼 임의관할설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1) 일반적 전속관할 규정과의 문언상 차이점

통상 사물관할이나 토지관할은 관련 법률상 명백히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전속관할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전속관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민사소송법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5판, p.8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5. 1. 선고2023가합8 결정, 울산지방법원2025. 5.21. 선고2025가합1018 결정

는 가사소송사건⁸⁾, 회사관계사건⁹⁾, 회생사건¹⁰⁾, 증권 관련 집단소송¹¹⁾, 할부거래 관련 소송¹²⁾, 방문판매 관련 소송¹³⁾ 등은 해당 법령과 조항에서 “전속관할”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¹⁴⁾

반면 언론중재법상 관할규정에는 “전속”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 일반적인 전속관할규정의 형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참고로 언론중재법상 관할규정의 문언 형식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조 외, 행정소송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502조, 가사소송법 제13조와도 유사하나, 정정보도청구등 소송의 토지관할을 위 법령들과 유사하게 규정하여야 할 논리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¹⁵⁾

(2) 언론중재법의 입법취지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에 관한 쟁송을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것 등을 기본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¹⁶⁾ 특히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중재절차는 법원에서의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소한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ADR)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언론중재법이 정정보도청구등 소의 사물관할을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의 관할로 규정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 가능한 반면, 그 토지관할까지 굳이 원고(피해자)가 아닌 피고(언론사) 소재지로만 한정할 합리적 이유는 찾기 어렵다.

8)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9) 상법 제186조(전속관할) 전2조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10) 채무자회생법 제3조(재판관할)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11)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조(관할) 증권관련집단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12) 할부거래법 제44조(전속관할)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와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3) 방문판매법 제53조(전속관할) 특수판매와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소비자 주소,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14)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5판, p.80

15) 행정소송법 제9조(재판관할) ①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가사소송법 제13조(관할) ① 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소송법 제502조 제502조(담보를 공탁할 법원) ①이 편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원고나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16) 언론중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언론중재법상 관할규정이 최초 입법된 당시의 국회 입법자료에도 정정보도청구등 소송의 토지관할을 오로지 피고 소재지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도나 그리 해야 할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설명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¹⁷⁾

(3) 소송 수행능력 격차의 완화 필요성

통상 정정보도청구등소송에서 토지관할이 문제되는 사례는, 예컨대 서울 소재 대형 언론사에 의해 지방 거주 개인의 법익이 침해된 경우 등 분쟁 당사자간의 지리적 거리나 경제적 격차가 상당한 경우가 많다.

임의관할설에 의하면 지방 거주 피해자는 민사소송법의 일반규정, 특히 손해배상채무의 의무이행지(민사소송법 제8조¹⁸⁾),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규정(제18조¹⁹⁾) 등에 따라 원고(피해자) 본인 주소지에 가까운 법원에 소송을 수행할 수 있어 이러한 소송 수행능력의 격차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전속관할설에 따라 피고(언론사) 소재지 법원에만 전속관할을 인정하게 되면, 위와 같은 소송 수행능력 격차로 인한 문제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언론중재법의 특별규정으로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의 일반규정을 배제해야 할 합리적 이유나 논리적 정당성은 찾기 어렵다. 물론 특정 언론보도에 대해 여러 법원에 유사소송들이 다수 제기되어 언론사가 이를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처럼 남소 방지나 포럼 쇼핑 방지가 필요한 경우도 상정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굳이 피고 소재지만을 전속적 토지관할이라고 해석하지 않더라도, 직권이송²⁰⁾ 등을 통해 특정 법원으로 관련사건을 이송시켜 병합심리되도록 하는 등의 실무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3. 조정신청인 입장에서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이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중재부가 직권조정결정을 강행하는 경우는 실무상 많지 않다. 그러나 일단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과 기록송부 이후 법원에서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되기도 전에 이송

17) 2004. 10. 20.자 언론중재법 제정안(의안번호170600),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등

18)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9) 민사소송법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0)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항

결정으로 소송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특히 조정신청인(원고)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1) 권리구제의 신속성 저해: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로 인하여 법익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실효적 구제를 위해 신속한 절차 진행에 관한 조항을 다수 규정하고 있다.²¹⁾

그러나 관할 위반에 따른 이송 결정과 이에 대한 항고 절차 등은 조정신청인의 권리 구제에 필요한 실질적 절차를 지연시킴으로써 언론중재법의 입법 취지를 저해할 위험이 높다.

(2) 조정신청인의 재판접근성 위축: 피고(언론사) 소재지로 이송될 경우 원거리 법원 출석과 소송대리인 선임 등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 받을 권리를 현저히 위축시키는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3) 언론중재신청에 대한 기피: 법원은 “언론중재법상 제소기간 규정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등 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진 이후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²²⁾

따라서 조정신청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언론중재 신청 후 조정기일 지정, 강제조정명령, 법원으로의 기록송부,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결정, 항고 신청 및 결정 등 과정에서 자칫3개월 내지6개월의 단기로 규정된 언론중재법상 제소기간이 도과될 것을 우려하여 처음부터 언론중재신청 자체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²³⁾

21) 언론중재법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제20조(증거조사) ③ 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기일 전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언론보도등 관련 소송의 우선 처리) 법원은 언론보도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22) 서울고등법원2022. 2. 24. 선고2020나2000153 판결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의 권리 행사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해당 언론보도가 허위의 사실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여전히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진 이후 법원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3) 언론중재법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4) **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 법원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실무상 혼선과 불확실성은 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도와 이용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통일적 해석과 적용 방안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4. 개선 방안

현재와 같은 규정상, 해석상의 혼란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들에 대한 추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1) **국회의 입법적 정비:**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국회가 언론중재법 제26조를 조속히 개정하여, (사물관할과 토지관할 규정을 분리하거나, 토지관할에 관한 부분을 생략하여 민사소송법의 일반적 토지관할 규정이 적용되게 하는 등 방법으로) 원고 주소지 관할도 선택적으로 병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만 지나친 남소나 포럼 쇼핑, 이로 인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 등을 우려한 반대론도 제기될 수 있다.

(2) **사법부의 통일적 해석:** 법원이 판례 등을 통해 정정보도청구등 사건의 토지관할 성격과 관련 규정의 해석론을 명확히 제시하여 하급심의 혼선을 종식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현행 법령의 문언을 벗어나기 힘든 해석론적 한계가 여전히 문제될 수 있다.

(3) **언론중재위원회의 실무 기준 보완:** 국회의 법령 개정이나 사법부의 통일적 해석 전이라도,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신청인 소재지 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할 경우 법원의 이송결정으로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을 당사자에게 충분히 사전 고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아예 일관적으로 피고(언론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기록 송부하는 등 방안으로 관련 실무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는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결론

언론중재법상 관할규정에 따른 “피고 보통재판적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가 전속적 토지관할을 규정한 것인지 임의적 토지관할을 규정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 혼선과 관련하여, 일반적 입법 형식, 언론중재법의 입법취지, 정정보도청구등 소송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일부 법원이 채택한 전속관할설보다는 기존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상의 임의관할설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상 혼선으로 인한 권리구제의 신속성 저해, 재판접근성 위축, 언론중재신청에 대한 기피, 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 등, 특히 조정 신청인에게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정비는 물론, 그 이전에도 사법부의 통일적 해석, 언론중재위원회의 실무 기준 보완 등 개선작업이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Part3

**언론소송 관할에 관한
실무적 고찰
- 재판 지연 해소와
예측 가능성 확보를
중심으로**

문윤정 | 동아일보사 변호사

언론소송 관할에 관한 실무적 고찰
- 재판 지연 해소와 예측 가능성 확보를 중심으로

문 윤 정
동아일보사 사내변호사

1. 서론

최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 소송에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이 정하는 토지관할의 성격을 둘러싼 해석의 불일치가 실무상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 법원은 이를 전속관할로 보아 피고인 ‘언론사 소재지’ 법원만이 관할을 가진다고 보는 반면, 다른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된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상 특별재판적 및 관련재판적 규정에 따라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특히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기록이 ‘원고 주소지’ 법원으로 송부될 때 그 문제가 두드러진다. 이를 전속관할로 해석하는 법원은 해당 사건을 관할 위반으로 보아 이송결정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판 지연 문제는 원고와 피고인 언론사 모두에게 절차적 불이익을 준다.

본 발제문에서는 언론사 사내변호사의 관점에서, 정정보도청구등 소송의 토지관할 성격에 관한 법리를 분석하고 각 견해의 논거를 비교·검토한 후 실무적 시사점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의 내용과 해석론

가. 규정 내용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을 동시에 규율하는 규정으로서, 피고인 언론사의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를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특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이 단순한 관할 지정인지, 아니면 다른 관할을 배제하는 전속관할인지에

관한 것이다.

나. 전속관할 긍정설의 논거

첫째,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은 민사소송법의 일반 관할 규정과 달리 특별법인 언론중재법에서 명시적으로 관할법원을 지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 수 있다. 특별법이 특정 소송의 관할법원을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는 입법자가 해당 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할을 집중시키려는 의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정보도청구등 소송은 언론보도의 내용과 그 허위 여부, 피해 존재 등에 관한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특수한 소송이다. 언론사의 소재지 법원이 해당 언론사의 보도 관행, 지역적 특성 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할 집중의 합리성이 인정된다.

다. 전속관할 부정설(임의관할설)의 논거

전속관할 부정설은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의 관할이 임의관할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된 경우 민사소송법상 특별재판적 및 관련재판적 규정에 따라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서는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속관할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그 취지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은 관할법원을 지정하고 있을 뿐, 이를 ‘전속관할’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와 대비되는 규정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²⁾ 등은 모두 ‘전속관할’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둘째, 언론중재법 제26조 제4항은 “제1항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와 손해배상청구의 병합을 예정하고 있다. 실무상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빈번하게 병합되어 제기되는데, 손해배상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민사소송

1) 제53조(전속관할) 특수판매와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2) 제36조(전속관할)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訴)는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居所(居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8조에 따라 원고 주소지에도 관할이 인정된다. 이 때 언론중재법상 관할을 전속관할로 해석한다면 민사소송법 제31조에 의해 관련재판적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즉, 원고 주소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서 정정보도청구를 병합할 수 없게 되어 원고(피해자)에게 두 번의 소송을 강요하거나 재판 관할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3. 실무에서 드러나는 문제

가. 관할 해석의 불일치가 초래하는 재판 지연

실무상 가장 큰 문제는 어느 견해가 이론적으로 더 타당한가가 아니라, 관할 해석의 불일치로 인해 실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원고 주소지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었다가 피고 측 관할 위반 주장 또는 법원의 직권 판단에 따라 피고 소재지 법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는 수 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지연은 언론사 입장에서는 보도의 적법성 여부가 장기간 불확정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 이는 추가 보도나 후속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원고 역시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이익을 입는다. 결국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나. 다수 언론사 공동피고 사건의 증가와 관련재판적 문제

최근 기사 인용 등 보도 환경의 변화로 인해 동일한 기사 내용이 다수 언론사에 의해 게재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다수 언론사를 공동피고로 하는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전속관할을 엄격히 적용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민사소송법 제31조에 의해 전속관할의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언론사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경우, 원고는 각각의 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사실상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여러 법원에서 중복된 심리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그 결과 판단의 모순가능성, 소송비용의 급증, 당사자의 절차적 부담 증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언론사들 입장에서도 공동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어렵고 동일한 내용의 기사에 대하여 각기 다른 판단을 받을 우려가 높아진다.

4. 언론사 사내 변호사의 관점에서 제도적 개선 방향

가. 원격 영상재판 제도의 적극적 활용

관할권 해석 대립이 해결되기 전까지, 물리적 거리를 극복할 현실적 대안은 영상재판의 적극적 활용이다. 언론 사건의 특수성, 즉 취재 인력의 증인심문 가능성, 다수 피고 사건의 증가, 신속한 피해구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영상재판 신청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관할 이송으로 인한 지연을 상쇄하고 언론사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해법이 될 것이다.

즉, 원고 주소지 법원에 사건이 계속된 경우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송신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보다 영상재판을 신청하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는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과도 부합하며, 불필요한 소송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나.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의 실무 기준 통일 필요

궁극적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이 의견을 통일하여 당사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되, 손해배상청구 등이 병합된 경우에는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만 확보된다면 관할로 인한 물리적 부담은 이송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대신 영상재판을 신청하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정정보도청구등 소송의 토지관할 성격에 관한 쟁점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언론피해 구제 제도의 실효성과 신속성, 피해자의 절차적 편의성, 언론사의 예측 가능성 등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법적 문제이다. 언론사에게 필요한 것은 특혜적 관할권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법 적용이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은 실무적 기준을 통일하여 더 이상 이송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의 권리구제라는 두 가치를 실무적으로 조화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기 때문이다.

Part4

〈언론소송 토지관할의 법적 성격〉 세미나 발제문

황성필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언론소송 토지관할의 법적 성격> 세미나 발제문

황 성 필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I. 서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26조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해당 관할이 전속관할인지 아니면 임의관할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입법 기술상의 문제를 넘어, 실무상 관할 위반 여부 및 이송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①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訴訟繫屬)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認容)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⑥ 정정보도 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 청구 및 추후보도 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제5항·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⑧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II. 입법연혁 - 언론기본법 등

1. 언론기본법 제51조제2항

현행 언론중재법 제26조제5항의 직접적인 연원은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1980. 12. 31. 제정·시행된 「언론기본법」 제51조제2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언론기본법 제51조 제2항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제1심재판은 피고

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현행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과 문언이 거의 동일합니다.

「언론기본법」[시행 1980. 12. 31.] [법률 제3347호, 1980. 12. 31., 제정]

제51조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위의 신청은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제1심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신청이 이유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49조제3항 내지 제6항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²⁾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1980년에 제정된 「언론기본법」은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1963년 제정)」, 「언론윤리위원회법(1964년 제정)」 및 「방송법(1963년 제정)」을 폐지하면서 만든 법률로서 정정보도청구권을 신설하고,³⁾ 청구자와

1) 「언론기본법」 제49조 (정정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후 신문·통신·방송의 경우에는 14일이내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월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정정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보도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정정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정정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신문·통신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정정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정정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정정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⑥ 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가 정정보도방송청구를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방송주파수에 의해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준용된다.

⑦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충실한 사실보도의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민사소송법[시행 1963. 12. 17.]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제697조 (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판결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 특히 외국에서 판결의 집행을 할 경우에 할 수 있다.

제705조 (본안의 제소명령) ① 본안이 계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소를 제기할 것을 채권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간을 도과하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국판결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3) “1980년말의 언론기본법은 ‘정정보도청구권’이란 이름의 규정을 처음으로 두었으며, 이는 1987년의 정간법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이 정정보도청구권은 문제된 언론보도의 진위 여부를 불문하며, 언론이 스스로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작성한 보도문을 무료로 보도할 의무만을 진다는 점에서 서구의 반론권제도를 입법화한 것임에도, ‘정정보도’라는 용어로 인하여 이 청구권의 성격에 관한 혼선이 있

언론기관과의 중재를 위한 준사법적 기구(언론중재위원회)를 마련하며, 법원은 언론에 관한 소송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언론기본법」 제51조는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절차를 규율하면서, 제1항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 관할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 정정보도청구사건은 가처분 절차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2. 「정기간행물법(1987년)」 및 「언론중재법(2005년)」

「언론기본법」 이후 1987년 제정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 그리고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 제26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정보도청구 등의 관할규정 문언은 사실상 그대로 승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속관할 여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의 부재라는 문제도 함께 승계되었습니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 1987. 11. 28.] [법률 제3979호, 1987. 11. 28., 제정]
제19조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었다. 그러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그 법적 성격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리되었으며(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헌재 1991. 9. 16. 89헌마165, 판례집 3, 518), 이에 따라 1995. 12. 30. 개정된 정간법에서 그 용어를 종전의 '정정보도청구권'에서 '반론보도청구권'으로 개칭하여 혼란을 해소하였다.

한편, 언론중재법은 제14조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을 규정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언론보도가 있은 후 6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고(제14조 제2항), 정정보도청구의 소 제기로 인하여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제26조 제4항),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비하여 현저히 짧은 제소기간을 두고 있다는 점(제14조 제1항)에서,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적 보도에 의하여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가 언론사에 대하여 자신의 사실적 주장을 게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반론보도청구권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이다.”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전원재판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 2005. 7. 28.] [법률 제7370호, 2005. 1. 27., 제정]

제26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①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 정정보도청구의소 가처분재판 규정

현행 언론중재법 제26조에 따르면 반론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는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도록 규정한 반면, 정정보도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한 구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함에 따른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결정).

가처분절차에서는 증명 아닌 소명에 의하는데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하여 소명만으로 청구를 인용하고 언론사에게 충분한 증거제출이나 방어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 보호만을 우선하여 언론의 자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입니다.⁴⁾

4) 당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도 존재하였음

-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에 대한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합헌)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이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심리절차를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다. 정정보도청구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쌍방에게 주장과 입증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다. 또한 소명의 증명정도와 증명의 증명정도는 이론상으로는 구분되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언론의 보도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 허위보도를 정정하는 것은 진실보도의무를 부담하는 언론사가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이고, 정정보도는 사실에 관한 보도가 허위인 경우에 인정되는

참고로, 반론보도청구의 경우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신속처리의 필요성을 들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전원재판부, 당시 심판대상이 정정보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실질은 반론보도임).⁵⁾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25호, 2009. 2. 6, 일부개정]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①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⑥ <u>정정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u>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제1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⑧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III. 전속관할 여부에 관한 해석론

1. 문제의 소재

전속관할이란 특정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법정관할 가운데서 재판의 적정·공평 등 고도의 공익적 견지에서 정해집니다. 직분관할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전속관할이지만, 사물관할·토지관할은 법률이 전속관할로 명백히 정해놓은 경우에 한합니다.⁶⁾

“것이므로 그것이 언론의 비판·견제기능을 약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5) 정재황, 「헌법학[제2판]」, 박영사(2022년), 1089면

6) 직분관할 : 재판권의 여러 작용을 어느 법원의 역할로 분담시키는 것이 적당한지라는 목적에 비추어 정해지는 것을 말함

→ 동일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절차, 강제집행절차, 보전처분절차와 같이 서로 다른 성질의 재판권이 발동될 수 있으며, 같은 재판절차 가운데서도 제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의 재판작용이 다르므로 이를 각각 정당한 법원에 배분하여 사건에 대한 여러 법원의 기본적 역할을 정하는 것이 민사소송제도를 설치·운영하는 법원의 체제를 갖추는 데 유리한데, 이러한 이유에서 인정된 것이 직분관할이므로 공익성이 매우 강하여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임

사물관할 :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의 제1심 소송사건 분담을 정한 것임

언론중재법 제26조제5항은 다른 입법례⁷⁾와 달리 명문으로 ‘전속관할’인지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해석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입법연혁 관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언론중재법 제26조의 직접적인 연원은 1980. 12. 31. 제정·시행된 「언론기본법」 제51조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입법자는 정정보도청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처분절차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⁸⁾

민사집행법은 법률에서 정한 집행 관련 재판적(토지관할, 직분관할 등 불문)은 전속관할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⁹⁾ 각 집행 관련 관할규정에서 당해 재판의 성질상 특정의 법원에서 심리·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¹⁰⁾

「언론기본법」 제51조는 정정보도청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처분절차에 따르도록 하면서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① 당시의 舊 민사소송

토지관할 : 같은 종류의 직분을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배분해 놓은 것임
[주석 민사소송법(편집대표 : 민일영), 한국사법행정학회, 2023.11.(제9판)]

7) 「회사정리법」[시행 1981. 4. 1.] [법률 제3380호, 1981. 3. 5., 일부개정] 제6조(정리사건의 관할) ① 정리사건은 회사의 본점의 소재지, 외국에 본점이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서울의 경우는 서울民事地方法院)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정리절차 개시신청전 1년내에 제1항의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가 이전된 때에는 이전전의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서울의 경우는 서울民事地方法院)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등기부에 의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전속관할)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와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8) [의안번호 120446] 정기간행물에관한법률안(박경석의원등 2인 외 144인) 심사보고서 中

아. 言論侵害에 대한 救濟制度에 관하여

言論侵害에 대한 救濟制度는 아시는 바와 같이 言論의 事實的 報道에 의하여 侵害된 個人的 名譽權을 회복시키기 위한 制度로서 그 救濟方法으로서는 대개 損害賠償, 謝過廣告, 反論權, 取消등이 행하여지고 있음.

모든 方法은 궁극적으로는 司法節次에 의하여 決定되겠음니다만, 이 가운데서도 신속을 요하는 反論權의 一部인 訂正報道請求權에 대해서는 세 法律案에서 문맥은 다르나 다같이 別途로 規定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9) 「민사집행법」 제21조(재판적) 이 법에 정한 재판적(裁判籍)은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민사소송법」[시행 1963. 12. 17.]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제524조(재판적) 본편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로 한다.

10) 주석 민사집행법(편집대표 : 민일영), 한국사법행정학회, 2024.11.(제5판)

법 규정에서도 강제집행(가집행) 관련 관할규정은 전속관할로 규정한 점, ② 정정보도신청이 이유있는 경우 행해질 정정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 등 후속 조치의 주체는 언론사로서 당해 재판도 언론사의 소재지에서 하는 것이 ‘재판의 적정’ 등 공익상 요구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관할규정은 전속관할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집행법이 아닌 소송법 관점에서도 민사소송법은 제정 이래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¹¹⁾ 언론중재법에서 실질적 의미의 ‘정정보도청구권’을 신설하면서 재차 정정보도청구등의소에 대해서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고 규정한 것은 현행법상 해석으로도 위 규정을 전속관할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즉, 언론중재법 제26조제5항은 직분관할로서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전속관할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¹²⁾

IV. 입법론

현행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이 전속관할 여부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해석상의 불명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관할 해석의 불일치는 사건 이송에 따른 재판 지연, 당사자 불편, 민원 증가 등 실무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 입장에서도 사건기록 송부 방식 등 업무처리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보건대 해석론상으로는 언론중재법 제26조제5항은 전속관할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석상의 불명확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는 전속관할임을 명시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1) 舊 민사소송법[시행 1960. 7. 1.]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제1조 (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제28조 (전속관할에 의한 제외) 제1조제6조 내지 제22조와 전2조의 규정은 전속관할의 규정있는 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신민사소송법(제15판, 2021년, 이시윤 저)에서도 해당 조항을 직분관할의 일종으로 소개하고 있음(제95면)

“3.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및 본원 합의부의 직분관할

(2) 지방법원 합의부에는 중요성과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6조 5항)와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등이다(법조 32조 1항 5호).”

구체적으로 유사입법례¹³⁾를 참고하여 언론중재법 제26조제5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로 개정하는 방안을 입법론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3) 「소비자기본법」 제71조(전속관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2조(전속관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Part5

독일의 논의에서 바라본 언론소송 재판관할권의 쟁점

이수종 | 언론중재위원회 전문위원

독일의 논의에서 바라본 언론소송 재판관할권의 쟁점

이 수 중

언론중재위원회 전문위원/법학박사

I. 문제제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촉발된 반론·정정·추후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재판관할권의 결정 문제는 사실 언론법 차원에서는 해당 청구권에 국한된 관할권 조정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히려 디지털 시대 인터넷 매체의 발전과 그의 특수성으로 인해 생겨난 국내 및 국제적 관할권의 결정이라는 새로운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미디어법 영역의 중요한 화두에 속한다.

이처럼 이번 세미나의 “언론 소송관할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는 단지 실무상 법원의 입장 차이의 조율에 관한 주제에 그치기보다는 좀 더 확대된 관점에서 디지털 시대의 언론소송 관할문제에 관한 논의의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왜냐하면 아직 국내에서의 관련 논의는 여전히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¹⁾ 그럼에도 이러한 광범위한 문제를 이번 기회에 모두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 논의를 기획자가 제시한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독일과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미나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된 i)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관할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토지관할의 불일치 문제, ii)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소송의 토지관할에 있어서 법원 내 불일치 문제에 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발제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다만 지면사정상 이번 세미나의 현안에 맞게 본 발제문의 내용은 연방독일 역내의 논의로 제한하고 국제관할권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II. 독일 언론소송에서의 재판관할권 문제

독일에서 언론소송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닌 금지청구권이 가장 빈번하게

1) 살펴본 국내에서의 대표적 관련논의로는 김상훈,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국제 재판관할-불법행위 특별재판적과 관련하여-, 한림법학 FORUM 제16권(2005), 김효정,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의 준거법, 국제사법연구(2024.6), 오정후, 민사절차법의 관할에 대하여, 저스티스 통권 제 134호(2013. 2) 등이 확인된다.

이용되고 있고 반론보도청구권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차이를 보인다.²⁾ 다만 독일 민법 제1004조와의 연계 하에 제823조 제1항(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하는 금지청구권은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모두 마찬가지로 민법 제823조 제1항의 불법행위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재판관할권 결정문제 역시 동일하게 정해진다. 반면에 각 주법에 개별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는 반론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엄연히 다른 관계로 이에 관한 재판관할권의 문제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³⁾

1. 금지청구 등의 토지관할

원칙적으로 언론보도의 피해당사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7조에 따른 언론사나 방송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대상으로 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13조에 따라 개별적 편집인의 보통재판적인 주소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독일의 언론소송에 있어서 실무상으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토지관할은 대개 민사소송법 제32조에 규정된 불법행위 특별재판적이다.⁴⁾ 이에 금지청구,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모두 불법행위에 의한 청구로서 이러한 행위가 벌어진 곳에 소재한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며, 이러한 불법행위지(Begehungsort)는 행위지(Handlungsort) 뿐만 아니라 결과발생지(Erfolgort), 즉 결과적으로 불법행위가 저질러졌거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곳의 모든 법원에 관할권이 존재한다.⁵⁾ 따라서 출판물의 경우 행위지는 출판물이 발행된 곳이고, 나아가 출판물이 의도한 바에 따라 전파된 곳 어디에서든 가능하다. 물론 원고의 주소지나 거소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⁶⁾

이와 관련해 소위 “이동관할권(fliegende Gerichtsstand)”의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원고나 신청인은 행위지든 결과발생지든 인격권 침해사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한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을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는 “포럼쇼핑(forum shopping)”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⁷⁾ 예컨대 가처분절차에서 필수적인 긴급성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도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주는

2) Seitz (2019). Handbuch des Persönlichkeitsrechts, 2. Aufl., §43, Rn. 1.

3) Soehring/hoene (2019). Presserecht 6. Aufl., §29 Rz. 30.24a.

4) Soehring/hoene (2019). a.a.O., §29 Rz. 30.25.

5) Benjamin Korte(2019). Praxis des Presserechts 2.Aufl §5 Rn. 91.

6) Wenzel/Burkhart/Peifer(2018). Das Recht der Wort-und Bild- Berichterstattung 6. Aufl., §12 Rz. 121.

7) Benjamin Korte(2019). a.a.O., §5 Rn. 91; Himmelbach/Mann(2022). Presserecht, §3 Rn. 13.

관대한 곳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⁸⁾

이에 독일에서는 무엇보다 지면신문 및 인터넷에서 공표된 보도로 인해 인격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2조의 소위 이동관할권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한해야 하는지에 관해 오랜 기간 동안 격론의 대상이 되었다.⁹⁾ 하지만 입법자의 이동관할권의 제한에 관한 입법개혁 노력은 결국 무위로 돌아간 바 있다.¹⁰⁾

(1) 지면신문, 방송

신문이나 방송 등 기존의 전통적 매체의 경우 재판관할권은 문제된 보도가 의도한 바대로(bestimmungsgemäß) 전파된 곳에 민사소송법 제32조의 이동관할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전통적 입장이다.¹¹⁾

이러한 “의도한 바에 따른 전파”라는 법적 기준은 특별한 사정, 즉 인쇄물의 한부를 주문하거나 지인을 통해 구매하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 연방대법원 역시 판매조직을 거치지 않고 아울러 정기적으로 배달되지 않은 채 간헐적으로 제3자에게 한 부 혹은 여러 부만이 한 지역에 배포됨으로써 통상적인 잡지의 배포지역을 벗어나 거주하는 독자들에게 그 내용이 알려지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설시했다¹²⁾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신문, 잡지 혹은 전국단위로 수신되는 방송의 경우에는 모든 지방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다.¹³⁾

(2) 인터넷 공표의 경우

한편, 인터넷을 통한 인격권 등 법익침해 내용의 전파에 있어서는 이동관할권의 인정과 관련해 특수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 매체는 내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검색가능하기 때문에 독일 재판부에만 재판관할이 인정되지 않고 세계적인 재판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¹⁴⁾

8) Himmelbach/Mann(2022). a.a.O., §3 Rn. 13.

9) 대표적으로 입법정책적 차원에서는 2013년의 연방의회 결의안, 학계 차원에서는 2009년 Hoeren 대 Prinz의 논쟁에서 시작해 2014년 Jürgens, 2015년 Dölling의 실증결과를 둘러싼 논쟁, 이어서 2020년 Jürgens의 재논박을 들 수 있다. Jürgens가 제시한 대표적인 실증결과의 예로는 2006년에서 2012년까지 이동관할권에 따라 115개의 지방법원들 가운데 단지 3개 내지 5개 법원에만 언론사건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했고, 무엇보다 쾰른 언론전담재판부의 급격한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Vgl. Uwe Jürgens, Aufsteigende Gerichtsstände - Der fliegende Gerichtsstand im Presserecht, NJW 2020, 1847.

10) Wenzel/Burkhart/Peifer(2018). a.a.O., §12 Rz. 120.

11) BGH NJW 1977, 1590, 1591.

12) NJW 1977, 1590; Korte. B(2019). a.a.O., §5 Rn. 93f.; Himmelbach/Mann(2022). a.a.O., §3 Rn. 24.

13) Soehring/hoene (2019). a.a.O., §29 Rz. 30.25.

그런 점에서 독일 국내에서의 인터넷 게시물이나 공표의 경우 토지관할에 관한 원칙에 관해서 아직 연방대법원은 명시적 입장을 밝힌 바 없다. 다만 미국의 뉴욕타임즈 보도로 인한 사건에서 국외의 인터넷 제공기사로 인한 인격권 침해소송의 경우 재판관할권에 관해서 2010년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의 단순한 검색가능성을 넘어서는 “국내 관련성(Inlandsbezug)”이 필수적이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이는 첫째, 문제된 보도의 단순한 검색가능성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경우 실제로 이를 인지(Kenntnisnahme)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둘째, 해당 보도의 인지를 통해 원고의 인격권 침해가 국내에서 발생했을 경우로 제한했다.¹⁵⁾ 다만, 이 두 번째 심사단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해명되지 못했다.¹⁶⁾

그럼에도 프랑크푸르트 상급법원은 2012년 이러한 뉴욕타임즈 판결에 따라 순수한 국내에서의 인터넷 보도에 대해서도 구체적 장소관련성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침해행위는 의도한 바에 따라 해당 관할지역에서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해석을 국내의 이동관할권의 제한근거에 원용하기도 하였다.¹⁷⁾

하지만 이후 인터넷 보도에 대해 추가적으로 동원된 뉴욕타임즈 판결의 기준은 보도가 단지 뚜렷한 지역관련성을 가졌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브란덴부르크 상급법원로부터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순수한 지역콘텐츠를 다루는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라 할지라도 지역을 넘어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다루는 경우에는 뚜렷한 지역관련성이 부인되고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2016년 브란덴부르크 상급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의 “Shevill”-사건에 따라 이동관할권의 제한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와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행위지는 매체가 전파되고 해당 매체의 보도로 인해 당사자의 명예가 침해되는 곳 모두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이동관할권 결정을 위해서는 명예훼손적 표현의 효과가 모든 의도된 수신인에 대한 전달에서 이미 발생하는 것이지 원고의 인지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¹⁸⁾

아울러 많은 지방법원들은 뉴욕타임즈 판결에서 도출된 연방대법원의 인터넷 보도에 관한 토지관할 제한기준은 민사소송법 제32조의 이동관할권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¹⁹⁾

이후 비교적 최근인 2021년 드레스덴 상급법원은 여전히 2010년의 뉴욕타

14) Soehring/hoene (2019). a.a.O., §29 Rz. 30.26.

15) NJW 2010, 1752, 1754.

16) Benjamin Korte(2019). a.a.O., §5 Rn. 95.

17) MMR 2012, 259.

18) MMR 2017, 261.

19) Himmelbach/Mann(2022). a.a.O., §3 Rn. 30f.

임즈 판결은 대체로 토지관할 결정에 있어서 전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인터넷 기사의 경우 단순한 검색가능성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민사소송법 제32조의 행위지는 보도내용이 분명히 재판관할지와 관련을 가지는 경우 (Inhaltliche Bezug)에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관련성은 무엇보다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소지 및 당사자의 전국적 지명도에서 생겨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재판관할지와 분명한 내용관련성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역시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²⁰⁾

2. 금지청구 등의 직무관할

한편, 2021년 1월 1일부터 약칭 “법원의 전문화 확대를 위한 법률”의 발효로 모든 독일 지방법원과 상급법원은 언론사건을 전적으로 전담하는 전문재판부를 설치하도록 강제됨으로써 언론사건에 관한 직무관할이 설정되었고, 민사사건에서 법원의 전문화가 확대되었다(법원조직법 72a조 제1항 제5호).²¹⁾ 이에 따라 각 주마다 지방법원 1곳과 상급법원 1곳에 두거나 여러 주에 걸쳐 관할권이 있는 1심, 2심 법원을 하나로 법원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2조에서 도출된 이동관할권을 언론소송에서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언론전담재판부가 있는 곳에서만 소송제기가 가능해졌다.²²⁾

이러한 최근의 상황변화는 앞서 언급한 토지관할에 일정한 제한을 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원칙적으로 이동관할권은 그대로 유지된다.²³⁾ 다만 여러 주에 걸쳐 언론사건을 공동으로 담당하는 언론전담재판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어쨌든 이동관할권에 일정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²⁴⁾

3. 반론보도청구권의 재판관할권

(1) 가치분절차를 통한 반론보도청구권 사건의 처리

바이에른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주법의 규정들은 반론보도청구가 자발

20) Matthis Lehr(2021). Einschränkung des “fliegenden Gerichtsstands” bei Internetveröffentlichungen ohne deutlichen inhaltlichen Bezug zum Gerichtsstandort, GRUR-Prax 2021, 287.

21) Himmelbach/Mann(2022). a.a.O., §3 Rn. 34.

22) Soehring/hoene (2019). a.a.O., §29 Rz. 30.25a.

23) Soehring/hoene (2019). a.a.O., §29 Rz. 25.

24) Uwe Jürgens, Aufsteigende Gerichtsstände - Der fliegende Gerichtsstand im Presserecht, NJW 2020, 1847.

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민사법원에 대한 가처분절차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²⁵⁾ 즉, 대부분의 주법상 반론보도 규정들은 “가처분 선고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고 “본안소송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²⁶⁾ 이때 청구의 위험성이 소명될 필요는 없다.²⁷⁾ 함부르크 출판법 제11조 제4항 제3문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반론보도청구권의 소송상 관철은 가처분선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바이에른주 출판법의 경우에는 본안심리 역시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실무상으로는 오랜 동안 시행되지 않고 있다. 다만 가처분절차에서도 독자적으로 소송상 무기평등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²⁸⁾²⁹⁾

연방대법원 역시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법상의 독자적 제도이고, 따라서 이러한 민사상 청구의 실현에 관한 규정 역시 그의 특성에 부합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³⁰⁾ 이에 언론법상 특징을 지닌 주법이 적법하게 개입한 것이라고 인정된다.³¹⁾

이는 방송영역이나 디지털서비스(과거의 텔레미디어) 영역도 마찬가지인데, 그 근거는 반론보도청구의 경우 게재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시의성(Aktualitätsbezug)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본안소송을 처음부터 제외하게 된다.³²⁾

(2) 보통재판적

반론보도청구권은 단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관철되므로 보통재판적은 전반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1조에 따른다. 따라서 가처분신청은 출판미디어의 경우에 언론사 소재지(제17조)로 정해지거나 편집책임자의 주소지(제12조)에 속한다. 방송보도의 경우에는 방송사의 소재지(제17조),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에도 그의 소재지(제17조)에 관할권이 인정되는 법원에 속한다.³³⁾ 만약 편집책임자에게 청구될 경우 그의 주소지에 법원 관할권이 있게 된다. 또한 언론사가 예외적으로 두 개의 등록 소재지를 보유한 경우 법원은 두 소재지 가운데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다. 한편, ARD의 방송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의 경우는 ARD 국가협약 제8조에

25) Soehring/hoene (2019). a.a.O., §29 Rz. 29.74.

26) Spieker, Hamm(2022). Beck'sches Rechtsanwalts-Handbuch, 12 Aufl, Rn. 77.

27) 예컨대 튀링겐주 출판법 제11조 제4항 제4문.

28) BeckRS 2018, 26322.

29) Benjamin Korte(2019). a.a.O., §5 Rn. 232.

30) GRUR 1968, 214.

31) Wenzel/Burkhart/Peifer(2018). a.a.O., §11 Rz. 206.

32) Wenzel/Burkhart/Peifer(2018). a.a.O., §11 Rz. 210.

33) Seitz (2019). a.a.O., §43, Rn. 60; Soehring/hoene (2019). a.a.O., §29 Rz. 29.77.

따라 전적으로 문제된 보도를 프로그램에 반영한 방송사의 소재지에 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된다.³⁴⁾

한편, 민사소송법 제29조의 이행지 재판적은 단지 계약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반론보도청구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³⁵⁾

(3) 불법행위 사건의 이동관할권의 적용여부

민사소송법 제32조는 불법행위의 특별재판적으로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곳에 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법에 따른 반론보도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³⁶⁾ 그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32조의 불법행위 특별재판적에 따른 이동관할권은 반론보도청구권의 경우에는 민법 제823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전제하지 않는 독자적인 종류의 법제도이기 때문이다.³⁷⁾

한편, 반론보도청구권은 예외 없이 비재산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합의관할이나 응소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0조 제2항).³⁸⁾

(4) 사물관할

관할권이 1심 지방법원(Landgericht)에 속하는지 지방법원 지원(Amtsgericht)에 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물관할은 금지청구권이 되었든 반론보도청구권, 정정보도청구권이 되었든 법원조직법 제23조 제1호에 의거 소송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이것이 대체로 5천 유로를 넘어서면 통상 주의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존재한다.³⁹⁾

이러한 소송가액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특히 사건의 범위와 중요성 및 관련자의 경제적 상황의 고려 하에서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확정한다(민사소송법 제3조).⁴⁰⁾

독일의 실무에서 반론보도청구의 소송가액은 원칙적으로 5천 유로 이상으로 정해지며 보통 1만에서 5만 유로 사이에서 소송가액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개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주어진다.⁴¹⁾

함부르크의 경우 반론보도의 소송가는 통상 1만~1만5천 유로로 책정된다.⁴²⁾

34) Soehring/hoene (2019). a.a.O., §29 Rz. 29.78.

35) Wenzel/Burkhart/Peifer(2018). a.a.O., §11 Rz. 222.

36) Spieker, Hamm(2022). a.a.O., Rn. 76.

37) Seitz (2019).a.a.O., §43, Rn. 60.

38) Wenzel/Burkhart/Peifer(2018). a.a.O., §11 Rz. 222.

39) Seitz (2019). a.a.O., §43, Rn. 61.

40) Soehring/hoene (2019). a.a.O., §29 Rz. 30.37.

41) Wenzel/Burkhart/Peifer(2018). a.a.O., §11 Rz. 224.

42) Benjamin Korte(2019), a.a.O., §5 Rn. 234.

(5) 반론보도청구권의 병합처리 가능성 여부

반론보도청구권은 금지청구 등 다른 청구권들과 병합하거나 병행하여 진행될 수 없다. 이는 특별한 주법에 따른 언론법상의 특유절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금지청구 등과 반론보도청구권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배제된다.⁴³⁾

특히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해 법원들은 소위 “전부 아니면 전무 원칙(Alles-oder-nichts-Prinzip)”이 적용되고, 반론보도청구권은 고도의 개인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실무상 원칙적으로 원래 청구된 반론내용이 취소되고 새로운 버전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반론청구서가 송부되어야 한다. 그에 반해 금지청구의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938조가 적용되므로 법원은 가처분내용을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청구와 반론보도청구는 신속하게 분리되어야 한다.⁴⁴⁾

III. 문제제기에 대한 의견

앞서 살펴본 독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선 국내에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한 토지관할은 원고 즉 신청인의 주소지에도 존재한다는 전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실무상 근거로는 우리 법원들이⁴⁵⁾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불법행위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8조에 의하면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지참채무로서 채권자의 주소지에 변제해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인정하는 판례들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판단근거는 수긍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인한 행위를 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기에 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독일의 경우도 인격권이 민사상 재산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많은 다툼과 논란이 있지만, 그러한 재산권 성격을 인정하는 학자들조차 이를 전면적 재산권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즉 인격권의 재산권 성격은 우선적으로 법적 성격이 아니라 시장 매

43) Wenzel/Burkhart/Peifer(2018). a.a.O., §11 Rz. 207.

44) Benjamin Korte(2019). a.a.O., §5 Rn. 237.

45) 대표적으로 대법원 1979. 7. 25.자 선고 79마 20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1. 4. 선고 2020가단 233336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6. 5. 선고 2023가단7371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6. 3. 6. 선고 2025가단50935 판결.

커니즘에 의한 사실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⁴⁶⁾

이에 연방대법원 역시 인격권의 재산적 이익은 특히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 음성 그밖의 인격적 표지에 자신의 평판에 해당하는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제3자가 상품광고에 이용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정신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상업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⁴⁷⁾ 이러한 점에서 인격권 침해에 관한 소송을 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8조 의무이행지에 의거해 의율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개인적 소견이다.

따라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다루는 언론소송의 토지관할은 보통재판적이 되거나 아니면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민사소송법 제18조에 따른 불법행위 특별재판적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동시에 국제관할권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권, 즉 기사삭제청구권 등이 소송대상으로 되었을 경우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아직 쟁점이 되거나 논란의 대상이 된 적은 없지만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불법행위의 이동관할권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소송의 토지관할을 전속관할로 보아야 할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언론중재법 제26조가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도 있고, 이를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도록 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전속관할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제6항에서 정정보도청구와 반론 및 추후보도청구를 분리하여 전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르고 후자는 가처분절차에 따르도록 정한 것에서 많은 혼란과 소송상 어려움이 야기된다.

반론보도청구권을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정한 것은 앞서 살펴본 독일의 언론법을 참조한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반론권제도의 취지상 신속성과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방안으로 이해된다.⁴⁸⁾ 하지만 독일에서도 하나의 절차에서 반론권과 금지청구권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권리의 속성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분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만큼 우리의 경우에도 이를 과연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의문이 든다. 다

46) Götting(2019). Handbuch Persönlichkeitsrecht 2 Aufl. §1 Rn. 39.

47) BGH GRUR 2000, 709, 712-Marlene Dietrich.

48) 박용상(2008). 명예훼손법, 1157면 이하.

만 현실적인 면에 국한했을 때 반론보도청구권의 소송 역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로 정한 이상 이 역시 전속관할의 성격을 배제하기 어렵고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도로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박용상(2008). 명예훼손법, 현암사

Benjamin Korte(2019). Praxis des Presserechts 2. Aufl.

Götting(2019). Handbuch Persönlichkeitsrecht 2 Aufl.

Himmelbach/Mann(2022). Presserecht, C.H.Beck.

Matthis Lehr(2021). Einschränkung des “fliegenden Gerichtsstands” bei Internetveröffentlichungen ohne deutlichen inhaltlichen Bezug zum Gerichtsstandort, GRUR-Prax 2021, 287.

Seitz (2019). Handbuch des persönlichkeitsrechts, 2 Aufl.

Soehring/hoene (2019). Presserecht 6. Aufl.

Spieker, Hamm(2022). Beck’sches Rechtsanwalts-Handbuch, 12 Aufl.

Uwe Jürgens(2020). Aufsteigende Gerichtsstände – Der fliegende Gerichtsstand im Presserecht, NJW 2020, 1847.

Wenzel/Burkhart/Peifer(2018). Das Recht der Wort-und Bild-Berichterstattung 6. Aufl.

Part6

언론중재법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항의 관할에 관하여

오정후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론중재법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항의 관할에 관하여

오 정 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1. 민사소송법학의 전속관할

민사소송법학의 전속관할이란 입법자가 공익 등의 이유로 어떤 사건을 특정 법원에서만 관할하도록 정한 것이다. 전속관할의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학의 관할 중 직무관할은 성질상 전속관할이고,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은 명문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만 전속적이다. 예컨대, 가사소송법 제2조는 전속적 사물관할, 제22조, 제26조, 제30조는 전속적 토지관할을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21조는 전속적 토지관할을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상법 제186조, 제287조의17 등도 전속적 토지관할,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2항은 토지와 사물관할 모두 전속관할로 정한다. 제453조 제1항은 토지, 사물관할만이 아니라 심지어 심급까지도 대상으로 한다.¹⁾

2.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의 관할

(1) 민사소송법상의 원칙에 따른 해석

이 조문은 위의 기준에 따를 때 전속관할이 아니다. 정정보도청구의 소 등을 법원이 재판하는 것은 법원의 고유한 업무인 ‘소에 대한 판결’ 업무이므로 직무관할을 특별히 규정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물관할과 토지관할 규정인데 명문으로 ‘전속적’이라고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전속관할이라고 새길 근거가 없다.

그런데 이 조문이 전속관할 규정이 아니라면 언론중재법에 특별히 이런 규정을 둘 필요가 없지 않을까?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은 이 조문 없이도 민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언론중재법에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을 따로 규정하였다는 것은 이를 전속관할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바로 법

1) 이 점에서 변경의 소와 재심의 소의 관할은 토지나 사물관할이 아니고 기판력 있는 판결의 변경 또는 재심이라는 ‘직무’와 관련된 직무관할이라고 새기기도 한다.

원의 입장이다.

(2) 정정보도청구의 소 등 제도의 연혁에 따른 해석

위의 의문을 풀기 위하여 정정보도청구의 소 등의 연혁을 살핀다.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가결한 언론기본법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을 신설하였다. 동법 제48조 제1항에서 법원은 언론에 의하여 피해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소송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동법 제51조 제3항에서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가처분 절차에 따라 심판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1987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의 정정보도청구(1995년 개정 이후에는 반론보도청구라 하였다), 제20조의 추후보도청구의 소를 거쳐 지금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소 제도로 이어졌다.

1980년 언론기본법은 제51조 제3항에서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가처분 절차에 따라 재판한다고 하면서, 그 앞의 제2항에서 관할법원을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로 정하였다. 현행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은 1980년 언론기본법 제51조 제2항과 거의 같다. 차이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제1심재판’이라는 표현이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한 제1심 재판’이라고 바뀐 것뿐이다.²⁾ 그런데 관할법원을 정하는 언론기본법 제51조 제2항이 가처분 절차에 따른다고 하는 제3항보다 앞에 있다는 점을 유의하자. 가처분 절차에 따르면 관할법원은 당시의 민사소송법 제7편 강제집행 제717조 제1항에 따라 ‘본안의 관할법원’이고, 이는 동법 제524조에 따라 전속관할이다. 언론기본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가처분 절차를 준용한다고 하기 전에 제2항에서 관할법원을 먼저 정하였으니, 이는 가처분 절차의 관할법원 조문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당시의 민사소송법 강제집행편의 가처분 법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었다면 토지관할이 전속적이었을 터인데, 이 조문이 준용되지 않도록 하였으니 오히려 이는 전속적이지 않다고 새길 수 있을 것이다.³⁾

그 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정정보도청구의 소(1995년 개정 후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추후보도청구의 소에도 관할법원 규정이 먼저

2) 언론기본법은 제51조 제1항에서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를 신청’한다고 표현하고 제3항에서 가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하여, 정정보도청구사건이 일반 판결절차와 다르다고 규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3) 글쓴이는 이전에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이 전속관할을 정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과 제6항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니, 앞선 제5항에서 관할법원을 따로 정한 것은 민사집행법의 가처분 절차와 관할을 달리 정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전속관할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규정되고 그 다음 항에서 가처분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앞의 두 법률과 달리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하고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추후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 따라서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서는 앞의 두 법률과 같이 새길 수 있을 것이고, 정정보도청구의 소가 문제이다.

그런데 현행 언론중재법과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은 정정보도청구의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를 반론보도청구의 소, 추후보도청구의 소와 구별하지 않고 묶어서 다룬다. 언론중재법과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에서 정정보도청구의 소와 반론보도청구의 소 및 추후보도청구의 소를 나누어 규정한 것은 제26조 제6항 하나밖에 없다. 오히려 언론중재법과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은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다른 소 2가지와 구별하지 않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 따르는 절차에 맞지 않는 규정을 둔 문제가 있다.⁴⁾ 이렇게 보면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에서 정정보도청구의 소의 관할법원을 정한 것은 예전에 언론피해 관련 소가 모두 가처분 절차에 따르던 시절의 규정을 별 생각 없이 그대로 가져온 것일 뿐, 정정보도청구의 소가 민사소송법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관할 조문을 언론중재법에 따로 두려고 한 것(심지어 전속관할을 정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3. 정정보도청구의 소 등 사건의 성격과 전속관할 - 입법론?

위 1.에 전속관할은 입법자가 ‘공익’ 등을 이유로 정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렇다면 정정보도청구의 소 등에 공익을 고려하여 전속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는가? 현행법 조문은 전속관할로 새길 수 없지만, 입법론으로 이런 소에 대하여 전속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는지 살핀다.

민사소송에서는 ‘공익’이라는 요소가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사인간의 사법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니 이는 당연하다. 그러나 민사소송도 국가기관의 절차이고 민사소송법이 국가권력인 사법권 행사를 규율하는 법이니 만큼 공익이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가 몇 있다. 전속관할은 그 드문 경우 중

4)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4조 제1항은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의 집행정지도 민사집행법 제309조의 집행정지에 따른다고 정한다. 정정보도청구의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정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과 맞지 않는 것이다. 하위법령의 상위법령 위반이다. 그리고 동 규칙 제3조와 제4조에서 정정보도청구의 소의 심판에서 변론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판결에 집행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정정보도청구의 소의 심판은 민사소송법에 따르므로 변론은 당연히 열어야 하고 집행기간의 제한도 없으니 이는 불필요한 규정이다.

하나이다.

직무관할이 성격상 전속관할인 것은, 사법부의 다종다양한 직무를 사법부의 어떤 기관, 어떤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사법부의 직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만 들면, 재판 업무는 법관이 수행하고, 집행 업무를 집행관과 사법보좌관이 대부분 수행하도록 하고, 등기업무를 등기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법부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사법부의 직무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은 결국 국민의 권리구제, 법률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공익의 문제이다.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은 이런 문제가 아니다. 제1심에서 지역적으로 어느 곳에 있는 법원이 특정 사건을 관할하는가, 합의부와 단독판사 중 어떤 재판부가 특정 사건을 관할하는가의 문제는 국민이 법원에 편리하게 접근할 가능성, 사건의 경중에 따른 구분, 법원의 업무부담 등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바꿀 수 있다.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은 특별히 공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전속관할이다. 가사소송법의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는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법원을 둘 필요가 있고 가사사건에서는 당사자만이 아니고 다른 이해관계인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때문에 전속관할로 정한 것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의 소의 전속관할은 피해자가 매우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민사소송법은 특허권 등의 사건에 대하여 전문재판부가 있는 법원에 전속관할을 인정한다.

정정보도청구의 소 등의 사건에 공익이 관련되는가? 그것도 피고 언론사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서 사건을 전속적으로 관할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가 있을까? 정정보도청구 등의 사건에서 당사자 외의 이해관계인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매우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어느 한 곳의 법원을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니며, 이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재판부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심지어 여러 법원 가운데에서 피고 언론사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서만 사건을 관할하여야 할 공익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민사소송법학의 관점에서 현행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의 관할을 전속관할로 새길 수 없고, 입법론적으로도 이것을 전속관할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자유 토론

사회자 심석태

지금부터는 자유토론인데, 오늘 세미나의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는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소송의 토지관할에 관해 입법론적으로 전속관할로 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임의관할로 하는 것이 맞을지부터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패널 김기수

전속관할은 당사자의 관할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재판 접근성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강한 공익적 필요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심리를 한다고 할 때, ‘반드시 그렇게까지 관할을 제한할 만한 공익적 필요가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굳이 전속관할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 토론회에서 쟁점이 된 것처럼, 손해배상과 함께 청구를 제기하거나, 여러 언론사들이 유사한 보도를 냈을 때 이를 한 번에 구제받고자 하는 피해자의 이익 측면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저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 절차로서 정정보도 제도를 구상한다고 한다면 굳이 전속관할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법 하에서 정정보도는 소송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반론·추후보도는 가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언론중재법을 구상할 당시에는, 이미 불법행위에 근거한 정정보도청구를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고려에 의해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의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굉장히 신속한 기간 내에 심리하도록 제한을 두면서 가처분 절차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처음 이 제도를 만들 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절차를 필요적 전치절차로 두지 않았습니까.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쳐서 소송하도록 한다면, 더욱 해당 법원을 특정 법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 행정소송에서의 필요적 전치주의라든지, 특별심판 규정 에 따른 특허법원 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처럼 전문적인 판단이 먼저 전제되고 이후 특정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유형의 사건들은 모두 전속관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 관련 소송 역시 그러한 공익적 요청이 인정된 유형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도 연혁을 봤을 때, 반론보도 등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전치 절차를 거치도록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공익적 필요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기존처럼 위법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심리하는 충분한 본안 절차로서의 정정보도가 아니라, 가처분 절차와 유사하게 매우 신속한 형태의 새로운 구제 수단으로서 정정·반론·추후보도를 규정한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전속관할로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라면 애초에 절차 자체가 가처분에 가까운 구조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와의 병합 자체가 어렵고, 따라서 관련 재판적이 문제될 여지도 처음부터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심석태

상당히 정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정후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널 오정후

민사소송법에서 이야기하는 공익이라는 것은 다른 여러 공법 영역에서 말하는 공익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을 경매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한다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절차의 정돈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앞서 다른 분 발제에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언급된 바 있는데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수십만 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공익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민사소송법에서 공익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체로 이런 몇 가지 유형입니다.

그런데 언론사건에서 과연 이런 의미의 공익이 있을까? 예를 들어, 언론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것과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패널 이수종

독일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위르겐스가 “언론사건은 경쟁법이나 특허법

처럼 특별한 재산권이나 특수한 권리를 다루는 전문 영역이 아니다”라고 발언하자 베를린 지방법원의 판사인 되링이 “인격권과 언론 자유 사이의 형량 판단은 우연한 개인의 취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이상, 명확한 판례법과 그에 관한 근본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도 양 법익의 기준을 수십 년에 걸쳐 재조정해온 수많은 연방대법원 판결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그리고 유럽 법원의 원칙들에 대한 판사의 충분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런 점에서 양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을 제공해야 한다면, 언론법 영역에서의 전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사회자 심석태

오정후 교수님께서 중요한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과연 언론 소송을 그렇게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또 실제로 우리 법원이 언론 소송을 그만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패널 채휘진

최근 들어오는 사건들 가운데, 한 신청인이 여러 언론사를 동시에 상대하는 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속관할 해석을 적용하게 된다면, 언론사별로 해당 지역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신청인 입장에서는 여러 지역으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자 심석태

언론사 입장에서는 과연 이 문제를 어느 정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패널 문윤정

언론사는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들을 다루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속관할로 해석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업무 부담 경감이나 편의 등을 이유로 전속관할을 주장하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나 역할에 비추어봤을 때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자 심석태

만약 향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전속관할로 한다’는 내용으로 국회에 제출된다면, 입법 심사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어떤 관점에서 검토하게 될지 황성필 입법조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널 황성필

소송의 출발점은 언론보도의 존재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언론보도의 사실관계나 취재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받고 재판부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재지 관할로 두는 데에 나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제도를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말 전속관할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으로 상정해왔던 대형 언론사가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뿐만 아니라, 현재 변화한 언론환경, 특히 소형 언론사나 새로운 매체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심석태

김기수 판사님께서 발제문에서, 법원 실무상 정정보도청구의 관할이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청구의 근거를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가 아닌 민법상 정정보도청구임을 특정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둘 간에 위법성 판단의 문제라든지, 규범적 책임의 구조 같은 부분에서는 분명 차이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패널 김기수

정정보도는 원래 반론보도보다 훨씬 더 엄격한, 위법성이나 고의·과실에 따

른 명예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의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중재법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약한 조건 아래에서, 사실 언론사가 열심히 취재해서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실이 아닌 경우라면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하게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자는 취지로, 어떻게 보면 언론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청구권을 새롭게 도입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차적인 측면에서, 그런 새로운 청구권의 인정으로 인해 언론사에게 부담이 생기는 만큼, 언론중재법에는 원래 피해자 보호에 대한 포커스도 있지만 언론 자유와의 조화적인 고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롭게 만들어진 비교적 약한 요건 하에서의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 최소한 소송 대응만큼은 언론사가 조금 더 편리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균형적인 고려도 혹시 있을 수 있겠다는 가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처분 절차에 의했을 때는 훨씬 더 언론사에 불리한 측면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소송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은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 조금 더 방어 기회가 늘어나고, 다시 균형이 어느 정도 회복된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전속관할로 인해서 언론사에게 주어지는 절차법적인 배려나 공익적 고려도 조금 완화되어서, 이제는 꼭 그런 정도의 배려를 하지 않더라도 언론사 부담 완화 내지 언론 자유와의 조화는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입법론적으로는 반드시 전속관할로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 않나’에 대한 하나의 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심석태

언론중재법에서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속관할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관할까지 지정하여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패널 김기수

이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많습니다. 물론, 법원이 빨리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되는 건 아닙니다. 대리인들의 입장도 있고, 더 증명하고 싶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중간에 끊고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리게 되면 보통은 피해구제가 제대로 안 됩니다. 결국 증거가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사자들이 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측면도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3개월을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약간의 반성은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의 취지상 원래는 정말 간이하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진실 여부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더 중요한 건 반론보도입니다. 반론보도는 정말 그야말로 빨리 해결해야 되는 절차거든요. 사실 깊이 있는 심리까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가처분 절차에 따라 ‘나는 반론할 이익이 있다’ 정도만 인정되면 신속하게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반론보도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정정보도를 주위적 청구로, 반론보도를 예비적 청구로 병합해서 소송 절차로 진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가처분 절차로 가야 할 반론보도까지 결국 소송 절차에 끌려 들어가게 되고, 정정보도를 심리하다 보면 그것도 한세월이 걸려서 1년 뒤쯤 가서 정정보도는 인정되지 않고 반론보도만 인정되는 식의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반론보도는 분리해서 가처분 절차로 따로 진행하고, 우선 신속한 구제를 받은 다음에 진실 여부는 나중에 다시 다룰 수도 있는 구조가 원래 취지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패널 채휘진

국내 상황과 관련해서 언론개혁이 굉장한 사회적 화두였던 당시에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보도에 좀 더 근접시키려는 시도가 있었

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같은 요소를 따지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실어줘라’에 가까운 한국만의 권리를 만들어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애초부터 법에서 피고 보통재판적으로 한다고 못 박았던 것은, 아마 박용상 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독일 사례를 보면서 ‘이런 유형은 결국 피고 재판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아예 그렇게 정하자’라는 취지에서 가처분 성격을 명시하면서 설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제도를 쪼개고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름도 바꾸고 절차도 나누다 보니 ‘정정보도를 어떻게 심리도 없이 가처분으로 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겼고, 결국 정정보도만 따로 떨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보통재판적으로 한다는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 정정보도청구를 중심으로 본다면, 불법행위에 관한 특별재판적보다도 오히려 피고 보통재판적 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당시 제도 자체가 신속하고 광범위한 언론피해 회복이라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권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이 피고 재판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자 심석태

오늘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현행법 하에서 우리가 언론 실무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해마다 수십 건씩 발생하는 이의신청 사건들에 대해 이용자의 관점에서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의견을 여쭙보겠습니다.

패널 황성필

정정보도청구가 소송으로 가고, 반론보도청구나 추후보도청구는 가처분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엮이면서 판단에 약간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손해배상이라는 것도 사실 정정보도청구와 관련된 심리를 하면

서 나오는 파생적인 청구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판자료를 어디서 가장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면, 손해배상과 엮여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소재지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만약 피고 소재지로 하지 않게 되면,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사이의 제도적 차이가 사실상 정도의 차이만 남게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건 자체는 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만, 언론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라는 공통된 목표를 놓고 봤을 때, 손해배상청구와 병합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소재지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자 심석태

이게 원래 처음 만들 때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만 있다가, 나중에 2005년도에 언론중재법이 만들어지면서 손해배상 부분이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지금 같은 문제도 함께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언론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른 지역에 가서 재판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도 물론 있겠지만, 시청자나 독자를 고려해야 하고, 언론의 공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방향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언론사 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법조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실무적으로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문윤정 변호사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패널 문윤정

저도 궁극적으로는 실무 기준의 통일이 필요하고, 입법론적으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의 기관적 성격을 놓고 봤을 때 결국 법원이 최종적인 분쟁 해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할 해석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혼선 자체도 문제이긴 하지만,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김기수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실무상 전속관할로 해석

하고 있고, 그것이 현재의 관행이라고 한다면, 언론중재위원회 역시 우선은 그 관행을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심석태

현재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사건의 자동소제기 시 피고 소재지 법원으로 사건기록을 보내고 있는데, 피해자(원고)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역에서 소송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피고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언론사 쪽 관할로 보내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패널 오정후

최근 몇 년 사이 민사소송법에 새롭게 도입된 전속관할 중 하나가 특허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특허권 침해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서 전속관할을 두게 된 건데, 그 이유는 기술 문제나 전문적인 내용 때문에 일반 재판부에서 심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큰 법원의 전문재판부를 염두에 두고 전속관할을 설정한 것이죠.

만약 언론사건에도 그 정도의 특수성이 있다고 본다면, 즉 기술사건처럼 전문성과 특수성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입법론적으로 전속관할으로 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언론사건이 일반 판사들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고, 기술사건처럼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아니라고 본다면, 굳이 전속관할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가 지금 당장 어떻게 실무를 운영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절차 지연으로 인해 원고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할 때 현재 법원 실무를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심석태

지금처럼 언론사가 전국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또 언론환경 자체도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 문윤정 변호사님 말씀처럼 다양한 유형의 원고들을 생각해

본다면 ‘반드시 언론사 소재지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꼭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황성필 입법조사관님 말씀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명예훼손 소송이나 언론 관련 소송에서 제출되는 증거나 자료 같은 것들이, 과연 반드시 현지에 가 있어야만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이동이 어려운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 자체를 들고 와서 심리하는 사건은 아니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 곳에서 관할을 인정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패널 이수종

독일에서도 이동관할 문제는 계속 논쟁이 되어 왔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헌법상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독일 기본법에서도 사전에 정해진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고, 법원 조직이나 관할 역시 미리 정해져 있어야 민사소송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취지의 헌법상 원칙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방식으로 재판권자가 선택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정정보도청구권을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아닌 다른 재판적에 적용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고, 또 누군가 전략적으로 특정 재판적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 결국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심석태

김기수 판사님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형의 소송이 계속 들어온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현재 방식대로 해석해서 관할을 넘길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달리 해석할 여지 역시 있다고 보시는지요.

패널 김기수

현재 언론 전담 재판부에서는 명시적으로 전속관할임을 전제로 실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논의만으로 곧바로 입장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론중재위원회로서는 이런 안내까지 함께 해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은 피고 주소지 법원으로 갈 수도 있고, 손해배상 사건이 함께 붙어 있으니 원고 주소지 법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만 유지할 경우에는 원고 주소지 법원이 관할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만약 원고 주소지 법원에서 계속 진행하고 싶다면 민법상 정정보도청구권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당사자에게 충분한 정보와 예측 가능성, 선택권을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심석태

마지막으로 채휘진 중재위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제로 중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니 지금 상황에서는 실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패널 채휘진

해당 규정을 전속관할로 해석하는 순간, 피고 주소지 법원 외의 다른 법원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 버린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대로 진행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 예를 들어 전국에 여러 피고들이 산재되어 있는 사건이라든가, 또는 당사자의 업무 특성상 출석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현재 법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 법원 실무는 현재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고 측에서 다른 방식의 절차 진행을 원한다면, 이후 법원 단계에서 추가 서면 제출 등을 통해 다른 법적 구성을 시도해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도까지는 안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적어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 가능성 정도는 안내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심석태

오늘 논의가 알려지고 나면 국내 언론사들이 앞으로는 관할 문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따지기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인식하지 못했던 언론사들도 ‘아, 관할을 다투는 데에도 실익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앞으로는 사건 흐름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절차적 전환점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조금 더 진지하게, 언론피해 구제절차 이용자 관점까지 포함해서 고민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자 김재원

언론중재위원회 기획팀 김재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패널분들이 여러 가지 연역적 논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기본법상 최초로 도입됐던 제도인데, 당시 언론기본법상의 청구권 내용은 지금 언론중재법처럼 ‘언론보도가 사실에 반하는지 여부’ 자체를 요건으로 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반론보도청구권에 더 가까운 형태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청구가 들어오면 비교적 간단하게 가처분 절차에 의해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후 언론중재법에서는 사실에 반하는 보도에 대해서까지 새로운 권리를 인정하면서 제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관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존 언론기본법상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앞으로 입법론적으로 다시 논의하게 된다면, 이런 서로 다른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 사실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정정보

도는 본질적으로 소송을 통해 판단할 문제라는 점 등을 감안해, 두 제도를 서로 다른 관할 구조로 설계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심석태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기자 시절 국회를 출입하면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항들이 다 연역적으로, 어떤 필연적인 이유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김기수 판사님 말씀처럼 ‘왜 이 조항을 반드시 이렇게 만들었어야 했는가’를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조항의 경우도 지금 돌이켜보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반론 보도청구권을 ‘정정보도’라는 이름으로 언론기본법에 넣어두었다가, 이후 지금의 실질적인 정정보도 개념도 들어오고, 거기에 손해배상까지 덧붙여지는 과정 속에서 관할 규정만은 80년대에 만들어진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참고해서 실무 운영을 해주실 것 같고, 또 이번 기회에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다면 향후 법을 정비하거나 개정하는 논의도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요즘은 언론 관련 법 개정 논의 자체가 예전보다는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깐요.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